

2015년도

##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

『2015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월 2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1. 사업개요

- ‘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’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- 2015년 지원규모 : 35억원

### 2. 지원내용

- 진단파제 : 중소·중견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
- 해결파제 : 중소·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
- 전담파제 :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·중견 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

< 지원범위 >

-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
-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
- ③ 융·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

### 3. 신청자격 및 내용

#### □ 중소·중견기업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

#### □ 주관기관

- 대학·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20인 이상을 과제관리시스템\*에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

\* 과제 관리 시스템 :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(<http://techin.sanhak.net>)

-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'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'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

\*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(<불임>참조)을 충족하는 경우, 별도 선정평가 생략

### 4. 지원금액 및 한도

#### □ 출연금 지원기준

- 진단과제 : 총 사업비의 100% 지원(민간부담 없음)
  - 해결과제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(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)
  - 전담과제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(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)
- \*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

## □ 지원조건

- 진단과제 : 최대 1개월, 1백만원 한도
- 해결과제 : 최대 4개월, 2천만원 한도
- 전담과제 : 최대 1년, 3천만원 한도

## 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중소기업 신청기간 : 연간 3회(해결과제 3회, 진단과제 3회, 전담과제 1회)

구분	진단과제	해결과제	전담과제
1차	2015.1.14~1.23	2015.3.11.~3.20	2015. 4.8 ~4.24
2차	2015.3.11.~3.20	2015.5.13.~5.22	-
3차	2015.5.13.~5.22	2015.7.15.~7.24	-

□ 주관기관 신청기간 : 2015. 1. 14 ~ 1. 23(신규 신청에 한함)

□ 신청방법 : 과제관리시스템 신청(<http://techin.sanhak.net>)

### ◦ 참여기업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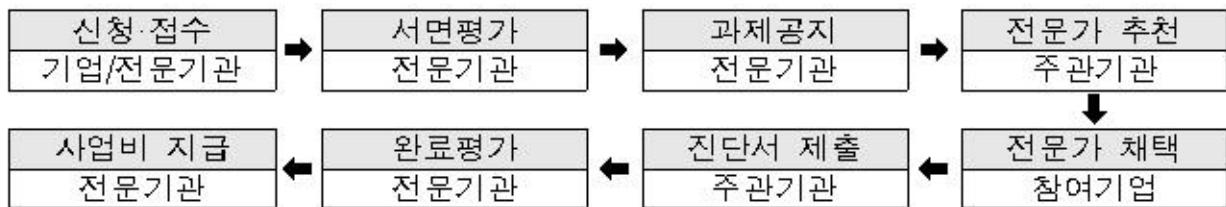
- (진단과제) 기술인정보시스템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기술애로 진단과제 → 과제신청 → 진단과제신청서 등록
- (해결과제) 기술인정보시스템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기술애로 해결과제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- (전담과제) 기술인정보시스템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기술애로 전담과제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### ◦ 주관기관 신청

- 기술인정보시스템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신규주관기관 신청서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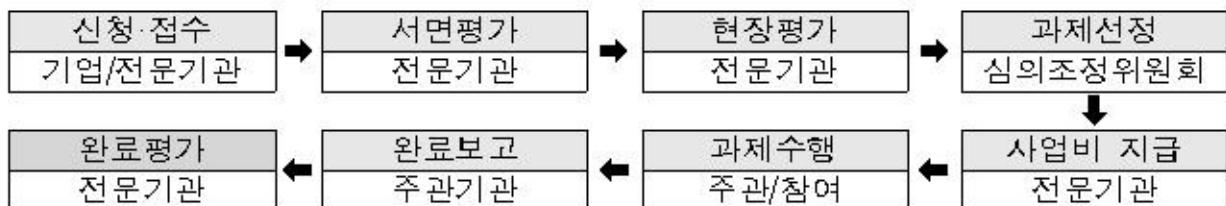
## 6. 선정 및 지원절차

### □ 진단과제



-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애로 해결가능성, 지원 필요성,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
- 선정된 신청기업의 기술애로를 과제관리시스템에 공지하고 주관 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연계하여 추천
-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단서를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, 전문기관은 완료평가 후 사업비 지급

### □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



- 주관기관은 이공계전문가 및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관리시스템에 신청
-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해당 차수별 지원 목표의 1.5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현장평가 시행
-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을 전문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서면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추천
- 퇴직 이공계전문가가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(2점) 부여
-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(중소·중견기업, 전문기관, 주관기관)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
- 전담과제 과제책임자로 선정된 연구년 교수에게 임명장 수여

## 7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중소·중견기업, 이공계전문가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인 경우
- 국세·지방세 체납자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참여 가능)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(단, 회생 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)

□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기본목적, 과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□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(전문가, 참여기업)

## 8. 기타 공지사항

- 진단과제와 해결·전담과제는 중복 지원 가능(단, 해결과제와 전담과제는 중복지원 불가능)

- 진단과제 및 해결과제의 과제책임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개이며,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
  - \* 진단과제 및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해결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에 미포함
- 전담과제로 참여하는 연구년 교수는 진단과제 및 해결과제 수행 불가
-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
-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

구 분	자 격 내 용
산업계	박사학위 소지자,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, 연구소장 및부장급 이상의 임직원
학 계	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
연구계	박사학위 소지자,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
기 타	기술사, 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

- \* (퇴직 이공계전문가) 산·학·연 또는 공공연구기관 출신으로 5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‘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’ 및 ‘2015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관리지침’을 적용함

## 9. 문의처

### □ 사업안내

부서명	연락처	문의사항
중소기업 R&D 콜센터	1357	신청·접수 및 사업문의 등

#### ※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

- 과제관리시스템 : <http://techin.sanhak.net>(기술인정보시스템)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iba.go.kr>
- AURI(한국산학연협회) 홈페이지 : <http://aurior.kr>

<붙임>

## 신규 주관기관 신청 안내

### □ 신청자격

-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-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
-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
-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수행 지원 가능 기관
-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
-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### □ 선정요건

-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 이공계전문가 정회원\* 20명 이상 보유
  - \* 정회원 : 소속기관, 논문, 경력, 정부사업 수행이력 등 필수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(자격 증빙자료 첨부)이 완료되어 전문기관이 정회원으로 승인한 이공계전문가
- 사업운영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기관
  - \* 전담인력은 산학연 코디네이터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
  - \* 신규 주관기관의 경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(1인 이상) 보유조건 1년간 유예

### □ 선정절차

- 주관기관 신청자격 및 요건을 자체 검토 후 신청서 제출
-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, 평가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
  - \* '2014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' 및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사업(산학연협력기술개발,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등) 주관기관은 현장평가 제외
- 주관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건 이행
  - \* 기간 내 선정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